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9. 4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8. 28.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 8. 28.
- 다. 상정일자 : 제7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0. 9. 4)
상정, 심사,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 해 석 환경과장)

가. 제정이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및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환경문제 및 그린라운드 등에 따른 국제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미래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마포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환경보전을 위한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권리 및 학교·언론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 및 지역환경기준의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구는 광역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는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구민이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흥토록 규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본건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법령 체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 환경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 마포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국제협력 등에 의한 환경관리 등을 통하여 우리구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미래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마포구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구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과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고, 본 계획의 수립이나 중요사항의 변경시 구민과 환경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음.

또한 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 집행할 때에는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음.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구민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민간환경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구는 환경보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구민 등을 참여시켜 지역환경 질에 대한 조사 및 자연환경 보전 및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제반 결과를 바탕으로 마포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과 그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로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동 조례(안)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1항에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고, 동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였는 바, 동조 제1항에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

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한 규정 중 "필요시"를 삭제하여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제11조에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에 대한 관련 내용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안제22조제2항 중 "환경오염 감시활동"은 "환경오염 감시활동"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제22조에서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환경위원회를 두고 민간환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민간환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입법체계상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제10조제1항에서 "필요시"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업무량과 인원이 한정되어 기본적인 업무외에 많은 업무가 늘어나므로 "필요시"로 하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필요시"를 삭제하고 의무적 규정으로 하였음.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민간환경위원회 위원은 몇명 정도 인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30명 정도로 구의원도 포함할 예정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제1조 목적에서 구민의 책무와 관련하여 책무를 다하지 않을 시 벌칙조항은 없는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개별법에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제재를 받음.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구민의 책무와 관련하여 구민이 알아야 책무를 다할 수 있으므로 구민에게 홍보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9. 4. 박상수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0조제1항 중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로 하고, "수립한다"는 "10년마다 수립한다"로 함.
- 안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 함.
- 안 제22조제2항 중 "감시활동"은 "감시활동"으로 함.
- 안 제22조제4항 중 "규칙으로"는 "조례로"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0. 9. 4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0조제1항 중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로 하고, "수립한다"는 "10년마다 수립한다"로 함.
- 안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 함.
- 안 제22조제2항 중 "감시활동"은 "감시활동 "으로 함.
- 안 제22조제4항 중 "규칙으로"는 "조례로"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하고 "수립한다"는 "10년마다 수립한다"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감시활동"은 "감시활동"으로 한다.

안 제22조제4항 중 "규칙으로"는 "조례로"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 ④</p>	<p>제10조(환경기본계획)①-----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10년마다 수립한다.</p> <p>② ~ ④</p>
<p>제13조(지역환경 기준의 유지) ①구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지역환경 기준의 유지)①-----서울특별시시장-----</p> <p>② (원안과 같음)</p>
<p>제22조(구민참여 등)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환경위원회(이하"민간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생략)</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환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구민참여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감시활동-----</p> <p>③ (원안과 같음)</p> <p>④-----</p> <p>조례로 정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및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환경문제 및 그린라운드 등에 따른 국제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미래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마포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환경보전을 위한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권리 및 학교·언론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9조)
- 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마포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 라.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 및 지역환경기준의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원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 마.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 바. 구는 광역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19조)

사.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는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구민이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흥토록 규정함.
(안 제21조 내지 제23조)

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함. (안 제25조)

3. 재정근거

- (1) 지방자치법 (2000.1.12 법률 제6115호) 제15조
- (2) 환경정책기본법 (1999.12.31 법률 제6097호)
- (3)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6.6.29 대통령령 제15082호)
- (4)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1996.5.20 조례 제3301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00. 7. 25 ~ 2000. 8. 1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2000. 8. 25) 심의완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개발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소음·진동, 먼지, 악취, 폐기물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먼지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①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 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4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단체 등에 환경상 등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할 수 있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한다.

제 3 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22조(구민참여 등)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다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환경위원회(이하 "민간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환경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환경위원회의 구성, 운영등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4조(환경조사 등) ①구는 환경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백서 발간)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